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명료화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로 이해가 쉽도록 함(안 제2조)

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확대(안 제3조)

- 현행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다.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
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③(생략)

[별표 2] <개정 2017. 2.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
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5.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3) 소 형	15㎡ ~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

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해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는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

비고

1. 운송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적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6.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기준 대 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다만, 집 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 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 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최저보유차 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의 종류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

	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덤프·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	---	--	---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 을 위해 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 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 을 위해 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 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	--	--

비고

-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한다.
-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

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삭제 <2016.1.7.>

소관 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윤 득 규
	담 당 자	김 영 섭 (480-6265)